

# 물품 제작, 설치 및 유지보수계약서



계약일자: 2009년 04월 22일



(주)신성에프에이 / (주)아이피에스

# 물품 제작, 설치 및 유지보수계약서

1. 발주자: (주)신성에프에이
2. 물품명: PE-CVD 1대 1호기 (견적서 세부항목 첨부)
3. 납품 및 설치장소: (주)신성홀딩스 증평공장
4. 물품 납품일 : 2009년 4월 15일(1차 중도금 70%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물품 납품일 기준으로 발행하고,  
대금지불 기준은 2009년 3월 31일로 한다.)
5. 계약금액: 일십구억이천오백만원정 (₩1,925,000,000)  
  
    공급가액: 일십칠억오천만원정 (₩1,750,000,000)  
  
    부가가치세 : 일억칠천오백만원정 (₩175,000,000)
6. 대금의 지급
  - 가. 선급금( 0% ): 계약 체결 후 익월 지급. 단, 대금 지급은 발주자의 내부 결제기준에 따름
  - 나. 중도금( 70% ): 납품일 세금계산서 발행 . 단, 대금 지급은 발주자의 내부 결제기준에 따름  
    중도금( 20% ): 납품일로부터 30일 후 세금계산서 발행.  
        단, 계산서 발행 이전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단시일 내에 조치가 불가하다고  
        상호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연기한다.
  - 다. 잔금( 10% ): 물품검사(시운전검수 포함) 합격 후 세금계산서 발행 .  
        단, 대금 지급은 발주자의 내부 결제기준에 따름
  - 라. 발주자의 결재기준: 매월 말일까지 청구 분은 익월 29일 지급 (오백만원 이하 현금/이상 어음)
7. 계약이행보증금: 계약금액의 ( 0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제출)
8. 선급금지급보증금: 계약금액의 ( 0 )% (선급금 지급 시)
9.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의 ( 10 )% (하자보수보증증권으로 대체함)
10. 하자보수의무기간: 납품 후 18개월
11. 지체 상금율: 1.5/1000 단, 계약금액의 10%를 넘지 않는다.

(주)신성에프에이 (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아이피에스(이하 "을"이라 한다)은 위 내용과 별첨 물품내역서, 물품 제작 및 설치계약(유지보수포함) 조건, 설계도면(1부, (작성시에 한함)에 의하여 이 물품 제작 및 설치계약(유지보수포함)(이하 "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이 계약서 및 관련 문서 2 부를 작성하여 각 1 부씩 소지 보관한다.

"갑" 상호 : (주)신성에프에이

주 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404-1

성 명 : 대표이사 조상준



"을" 상호 : (주)아이피에스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3

성 명 : 대표이사 문상영



## 별첨 2.

# 물품 제작, 설치 및 유지보수계약조건

### 제 1 조 (총칙)

"갑"과 "을"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며, 설계, 물품의 제작 및 설치와 납품된 물품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제반 유지보수업무를 "갑"이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동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프로젝트 수행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 제작, 설치 및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

### 제 3 조 ("갑"의 업무 수행)

- (1) "갑"은 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을"에게 통지한다.
- (2) "갑"은 "을"에게 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한다.

### 제 4 조 ("을"의 업무 수행)

- (1) "을"은 이 계약조건에 의하여 설계, 제작 및 설치 작업 및 설치물품에 대한 제반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한다.
- (2) "을"은 일정표 또는 공정표 및 설치를 위한 도면 등을 작성하여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을"은 이 계약 내용에 의하여 설비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품목을 "갑"에게 제출한다.
- (4) "을"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설계 및 설치 시 경미한 변경이나 기능, 성능 또는 구조상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 (5) "을"은 설비유지보수에 필요한 최종완성도면을 잔금 신청 전까지 "갑"에게 제출한다.

### 제 5 조 (권리. 의무의 양도 및 소유권)

- (1) "갑"과 "을" 간의 계약관계 중에 어떠한 발명, 발견, 도안 개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제작, 저술, Know-How 또는 Idea 등을 성취하게 되는 경우, 그 영업비밀이 산업체재산권으로 등록 할 수 있는 것인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1. "갑"과 "을"이 협력하여 수행중의 사업과 관련되는 것이거나
  2. 계약에 명시된 "을"의 계약상의 업무수행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거나
  3. "갑"이 제공하는 시설, 장비, 문서 또는 유무형의 자료를 이용하여 성취된 것이라면 이는 "갑"과 "을"간의 계약관계로 인하여 행하여진 발명으로 간주하여, 발명을 출원한 회사의 소유로 하고 이러한 발명 등에 대한 산업체재산권 등록 등은 해당 출원 회사에 귀속된다.

- (2) 본 계약서 상의 제 19 조에 의거 매월 기성 분에 대한 대금 또는 잔금을 지급할 시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당해 물품을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서면에 의한 승낙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동의 포함)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을"은 "갑"의 목적물 또는 설치현장에 반입하여 검사를 마친 제작 및 설치용 재료를 제 3 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 제 6 조 (계약이행보증)

- (1)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계약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계약이행보증증권을 계약체결일로부터 7 일 이내에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2) "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 1 항의 계약이행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 (3) "을"의 계약불이행에 의한 손실액이 제 1 항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갑"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4) "갑"은 이 계약이 제 22 조 규정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이행보증금을 지체 없이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 7 조 (감독원)

- (1) "갑"은 자기를 대리하는 감독원을 임명할 수 있다.
- (2)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제작 및 설치 ~~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을" 또는 "을"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제작재료와 설치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제작 및 설치의 진행부분검사 및 완료검사 또는 계약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 (3) "을"이 "갑" 또는 감독원에 대하여 검사 입회 등을 요구한 때에는 "갑" 또는 감독원은 이에 응한다.

#### 제 8 조 (현장대리인)

- (1) "을"은 현장대리인을 두며 이를 미리 "갑"에게 통지한다.
- (2) 현장대리인은 제작 및 설치 현장에 상주하며 "을"을 대리하여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 제 9 조 (종업원 및 고용원)

- (1) "을"이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이 계약의 이행 또는 관리에 관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한다.
- (2) "을"은 그의 대리인, 안전관리 책임자,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지며, "갑"이 "을"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계약이행 또는 관리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3) "을"은 제 2 항에 의하여 교체된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을 "갑"의 동의 없이 이 계약에 따른 제작 및 설치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 제 10 조 (제작 및 설치재료의 검사)

"을"이 사용하는 계약수행 용 기자재는 사용 전 "갑"이 지정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시에는 조속히 대품을 반입하여 검사에 합격된 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 11 조 (사급 재료)

- (1) 계약수행에 사용하는 기자재 중 일부는 "갑"이 제공할 수 있으며, "갑"이 제공하는 기자재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을"에게 인도하며, "을"은 그 후 일체의 보관운반책임을 지되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는 "을"은 "갑"의 요구에 의하여 원상회복, 수선 또는 대품을 충당하거나 "갑"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대가를 변상한다. 단, 불가항력 또는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한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 (2) "을"은 사급 재료를 계약의 목적을 이행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잉여분은 "갑"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제 12 조 (부적합한 제작 및 설치 등)

- (1) "을"은 제작 및 또는 설치하는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일치함을 보증하며 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납품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 (2) "갑"은 납품하는 물품에 설계도서등과 상이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3) "을"은 제 2 항의 통지 및 대체납품의 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체납품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 (4) "을"이 제 3 항의 대체납품을 거부하거나 대체납품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대체납품을 하지 못한 때에는 "을"은 즉시 당해 물품 대금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5) "을"은 제 3 자가 "갑"을 상대로 물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을 주장하며 소송 등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 당해 소송 등으로부터 "갑"을 면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귀책사유가 "을"에 있는 것으로 "양방"이 상호 인정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 및 제반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13 조 (제작 및 설치의 변경, 중지)

- (1)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갑"의 원 발주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을"에게 서면으로써 계약내용의 변경, 추가 또는 계약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제작 및/또는 설치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나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과 "을"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어느 당사자의 계약금액 증감에 대한 요청은 위 서면통지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동 기간의 초과로써 "갑"과 "을"은 계약금액 증감요청 권한을 포기하고 계약금액 조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 (2) "을"은 본 조에 규정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에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 숙지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계약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 제 14 조 (계약 금액 변경)

"갑"은 중요 부분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을"과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 제 15 조 (검사 및 인도)

- (1) "갑"은 "을"로부터 물품의 중간검사 또는 제작 및 설치의 완료에 대한 검사(이하 "설치완료 검사"라 한다)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검사(설치완료 검사의 경우에는 시운전검수를 포함하며, 이하 중간검사와 제작 및 설치 완료 검사를 총칭하여 "물품검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2) 제 1 항의 물품검사에서 합격한 때(설치완료 검사의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시운전완료증명서를 발급 받아야만 당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또한 설치완료 검사의 합격 후 영업일 5 일 내에 "갑"은 "을"에게 시운전완료증명서를 발급한다)에 목적물이 인도(납품)된 것으로 보며, "갑"은 즉시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 (3) "을"은 "갑"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갑"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한다.
- (4) 설치완료 검사에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을"은 "갑"의 서면 통지 접수 이후 7 일 이내에 복구함을 기본으로 한다. "을"이 "갑"의 서면 통지 접수 이후 30 일 이내로 서비스를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 "을"은 해당 결함을 반드시 수리하여야 하며 수리기간은 하자보수 의무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을"은 계약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모든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현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정돈한다.

#### 제 16 조 (정기 점검 및 긴급 보수)

- (1) "을"은 본 계약서에 명기된 하자보수 의무기간(납품 후 18 개월) 동안 "갑"의 고객 사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이 보수 및 정기 점검을 제공한다.
- "을"이 "갑"에 제공한 모든 제품에 대해 적법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파견하여 Maintenance 업무를 제공한다.
  - 정기점검 시간은 "갑"의 납품장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정기점검에 준하며, 구체적인 정기점검 스케줄은 "갑"의 고객 사 사업장 상황에 맞추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한다.
- (3) "을"은 장애발생 시 긴급 보수를 제공함을 기본으로 한다.
- (4) "을"은 정기점검 및 긴급보수와 관련된 인건비와 자재비를 "갑"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단, "갑"의 실수, 오용, 또는 잘못된 운용에 의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해당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하자보수 의무기간 동안에 소모품 교체 비용은 "갑"에 의해 부담된다.

- (5) 납품장비의 중대한 장애발생으로 인하여 교체/수리가 필요 시에는 투입된 인건비용 및 부품비용은 별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단,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을"의 과실로 인한 경우는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6) "갑"의 고객 사 사업장 내에서 보수활동 중에는 "갑"의 고객사 엔지니어와 함께 행동하여야 한다.
- (7) 보수완료의 기준은 정상 가공 상태로 한다.
- (8) "갑"의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갑"의 고객 사 사업장 및 line 내 출입 관련 사항
  2. 기타 보수 활동에 필요한 요청사항은 "갑"과 "을"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 (9) "을"이 정기점검 및 긴급보수를 수행 후 작업보고서를 제출하여 "갑"의 고객 사 검수 및 서면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제 17 조 (손해의 부담)

- (1) "을"은 계약의 목적물이 "갑"에게 인도되기 전에 계약의 목적물이나 제 3 자에게 손실이 있을 경우 이를 부담 한다.
- (2) 물품의 검사기간 중 "갑", "을"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당해 물품이나 제 3 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3) "을"은 고의, 과실로 인하여 물품의 제작 및/또는 설치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 제 18 조 (선급금)

- (1) "갑"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 (2) "을"이 선급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선급금 이행보증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 (3) 선급금은 계약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 (4)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

선급금 정산 액 = 선급금액 × -----

계약금액

- (5) "갑"은 제 21 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을"에게 이미 지급한 선급금의 잔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제 19 조 (대금지급)

- (1) 1 차 중도금 70%, 2 차 중도금 20% 잔금 10% 로 한다.
- (2) 잔금은 제 15 조 제 2 항에 따른 설치완료 검사 합격("갑"의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시운전완료증명서, 오퍼레이션 매뉴얼, 유지보수 매뉴얼, 및 스페어파트 리스트를 첨부한 경우에 한함)의 제반 서류 제출 후 익월에 "을"에게 지급된다.

#### 제 20 조 (하자담보)

- (1)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설치완료 검사(시운전검수 포함) 후 그 제작 및 설치의 대가를 지급 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의 증거로서 "갑"에게 납부한다. 다만, 물품의 제작 및 설치의 성질상 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전기통신공사협회가 발생하는 보증서
  2. 보증보험증권
  3.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4. 국채 또는 지방채
  5.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6. 금융기관의 예금증서
- (2) "을"은 설치완료 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하는 하자보수의무 기간 중 "을"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 (3) "을"이 제 2 항의 하자보수의무기간 중 "갑"으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 1 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 (4) 제 1 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을"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5) 물품의 제작 및/또는 설치상의 하자가 "을"의 고의에 기인한 것일 때에는 하자보수의무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을"이 실액 변상을 하거나 이를 보수한다.
- (6) 물품에 대한 하자가 계약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일 때에는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 21 조 (이행지체)

- (1)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물품의 납품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 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한다. 단, 지체배상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물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납기를 연기하는 것에 대해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을"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제 1 항의 지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성부분 검사를 거쳐 인수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작 및 설치의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경우에 한한다.
-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작 및 설치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1. 천재지변, 전쟁, 항만봉쇄, 방역 및 보안상 출입 제한 등으로 인한 경우
  2.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진행이 지연되거나 제작 및 설치가 중단된 경우
  3.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4) "갑"은 제 1 항의 지체상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액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5) "갑"은 제 1 항의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갑"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 제 22 조 ("갑"의 계약해지)

- (1)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면으로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을"이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을"의 부도, 파산선고,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신청,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을 포함한다)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제작 착수 일을 경과하고도 제작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 기간 내에 제작 및 설치를 완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될 때.
  3. "을"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3) 제 1 항 또는 제 2 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 (4) "갑"은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금액이 제 3 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액을 초과 할 경우에 "을"에게 그 초과 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5) "갑"은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제 23 조 ("을"의 계약해지)

- (1)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40/100 이상 감소된 때
  2.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수행을 완료 하는 것이 불가능 한 때
- (2) "을"은 제 1 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 24 조 (안전관리)

- (1) "을"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필히 가입하여야 하며, "을"은 동 관련 서류를 "갑"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2) 본 계약의 현장 내외에서 본 계약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을"이 부담한다.
- (3) 안전관리비용은 본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제 25 조 (소유권 및 산업재산권)

- (1) "을"은 제작 및 설치한 물품이 제 3 자의 소유권 및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 (2) 제 3 자가 "갑"에 대하여, 제작 및 설치된 물품이 제 3 자의 소유권 및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타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 "을"은 "갑"의 면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 및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 26 조 (비밀유지 및 공개 금지)

"양방"은 이 계약서에 첨부 되는 관련 도면 및 이와 관련된 사항 기타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제 3 자에게 유출하지 아니하며, 외부로 유출될 경우 이에 대한 문제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공개한 일방"의 책임으로 한다.

- (1) "갑"에게 제공할 모든 정보나 자료는 "갑"과 "을" 사이에 추진될 거래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을"은 "을"의 주주, 임원, 종업원 및 고객 등 어떤 관련 당사자에게 정보나 자료나 제공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시한 바대로 본래의 거래목적에 관련 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 (2) "갑"의 서면동의 없이 "을"은 본 신규사업과 이와 관련하여 취득된 정보나 자료뿐만 아니라 관련된 교섭, 토의 또는 구체적인 교섭내용 및 조건 등에 대하여서도 비밀유지를 준수 하여야 한다.
- (3) "갑"과 "을"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기 영업비밀을 제 3 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4) 관련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에서 제 3 자에게 영업 비밀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하는 영업비밀의 범위를 특정하여 상대 측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제 3 자에게 제공한 영업비밀의 범위, 공개시기, 영업비밀수령대상자, 공개 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5) "양방"은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되거나 위 제 21 조와 제 22 조에 해당 되는 경우 이미 제공된 자료나 정보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상대방"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양방"은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 자료나 보고서나 기타 어떠한 문서도 모두 폐기 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상호" 서면으로 확인 하여야 한다.

## 제 27 조 (경업금지)

- (1) "을"은 "갑"의 국산화 협력사와 개별 사업을 하지 않는다.
- (2) "갑"과 "을"은 동일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쟁하지 않으며 "양방"이 상호 협력하여 사업을 도모한다.

## 제 28 조 (권리, 의무의 양도)

"을"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29 조 (현장청소)

현장 내 청소 및 폐기물처리는 원칙적으로 "을"이 하되 "갑"의 감독원이 판단하여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갑"의 현장 감독원의 권한으로 일괄 집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제 30 조 (이 계약의 효력)

- (1) 이 계약은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 (3) 이 계약은 "갑"과 "을"의 상호 서면합의에 의하여만 그 내용이 변경, 수정, 추가될 수 있다.

#### 제 31 조 (분쟁의 해결)

- (1)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 (2)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견적서

Page : 1 of 1  
견적번호 : IPSS-09014  
견적일자 : 2009.04.01

TO : 쭈신성FA 귀하  
합계: 일십칠억오천만 원

- 납품기일(Delivery) : 발주 이후, 6개월
  - 지불방법(Payment) : 계약(70%), 납품(20%), Sign-Off(10%)
  - 유효기간(Validity) : 1개월
  - 비고(Remarks) : 부가세 별도

사업자 : 125-81-18225  
등록번호  
상호 : 주식회사 아이피에스  
대표이사 문상영  
주소 : 경기 평택시 지제동 33번지  
업체 : 제조, 도매, 서비스  
업종 : 반도체 장비, 전자장비



NO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PECVD System #1 (8*8, 156mmx156mm)	1대		₩1,750,000,000	
	PECVD				
	(1) Process Chamber Ass'y	1			
	- Shower Head Ass'y				
	- Pumping Line Ass'y				
	- Heater Ass'y				
	- Gas Line Ass'y				
	- Gas Box Ass'y				
	- Frame Ass'y				
	- Shield Ass'y				
	- Pressure Control Ass'y				
	- Cart Moving Ass'y				
	- Top Lid Ass'y				
	- RF Generator & Matching Network				
	- RPG Cleaning Ass'y				
	(2) Loadlock Chamber Ass'y	1			
	- Cart Moving Ass'y				
	- Pumping Line Ass'y				
	- Heater Ass'y				
	- Top Lid Ass'y				
	(3) Unlock Chamber Ass'y	1			
	- Cart Moving Ass'y				
	- Pumping Line Ass'y				
	- Top Lid Ass'y				
	(4) Control Rack Ass'y with Touch Panel	1			
	(5) MPD Ass'y	1			
	(6) Cable Ass'y	1			
	(7) Cart Ass'y	5			
2	Spare & Swap Parts	1			
3	Sign off 이후, Warranty	1			
4	Manual	1			
5	기업이윤				
6	부대 설비				
	(1) Process Pump	1			
	(2) Load/Unload Lock Pump	2			
	(3) Scrubber (Thermal & Wet Type)	2			
	(4) Chiller	1			
7	자동화 Software	1			
	TOTAL			₩1,750,000,000	
				(VAT 별도)	

<Note>

Yours faithfully,  
IPS Ltd.

**H.J.Kim**  
Authorized Signature

